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2. . . .

발 의 자: 김지수 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강서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·생활보조수당과의 중복지원 금지 조항삭제
(안 제9조의 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정부의 시책)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”

제9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의3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</p> <p>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9조의3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u>. 다만,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